

성희롱·성폭력 예방 규정

2021. 12. 06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의 목적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,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20조,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광진구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의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시체육회의 직원(회장과 고용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)으로 한다.

제3조(성희롱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성희롱”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.

제3조의2(성폭력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“성폭력”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제4조(기관장의 책무) 회장은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실의 설치·운영, 성희롱·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·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고충상담실) ①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·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·처리를 위하여 인사관련부서에 성희롱·성폭력 고충상담실(이하 “고충상담실”이라 한다)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

있도록 한다.

② 고충상담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(이하 “고충상담원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고충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·조언 및 고충의 접수
2. 성희롱·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
3. 성희롱·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
4. 성희롱·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5. 성희롱·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기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업무

④ 고충상담실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5조의2(고충처리 업무의 지원) ① 회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·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실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고, 성희롱 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의 고충상담실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성희롱 예방교육) ① 인사 관련 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희롱·성폭력 관련 법령
 2. 성희롱·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
 3. 성희롱·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 4. 성희롱·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 5. 민원인,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·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안
 6.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
- 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 관련 부장은 교육일시, 방법, 교육 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고충상담 신청) ①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·성폭력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실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.

제8조(상담및조사)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·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·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 [별지 제3호 서식]에 상담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,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여 상담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. 또한,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조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
④ 조사 과정에서 인사 관련 부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

제9조(피해자보호및비밀유지) ① 인사 관련 부장(인사·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인사 관련 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성희롱·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

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성희롱·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지원치료,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·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.

③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·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0조(조사결과의 보고 등)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성희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 관련 부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,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.

제13조(조사의 종결) 조사결과 성희롱·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.

제14조(징계) ① 회장은 성희롱·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 전환,

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.

② 회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·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·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5조(권한의 위임) 회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권한 일부를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칙(2021. 12. 06.)

제 1 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고충접수 및 처리대장								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신 청 인		고충내용	처리결과	회신 일자	확 인	
		성명	소속부서				담당자	인사관련 부관장

[별지 제2호 서식]

성희롱 고충 신청서					
접 수 일	20		담 당 자	(서명)	
당 사 자	신 청 인	성 명		소 속	
		직 급		성 별	
	대 리 인 ※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	성 명		소 속	
		직 급		성 별	
	행 위 자	성 명		소 속	
		직 급		성 별	
상담(신청)내용	※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, 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.				
요 구 사 항 ※ 조사를 원하는 경우	1. 성희롱의 중지() 2. 공개사과() 3. 징계 등 인사조치() 4. 기타()				
처 리 결 과					
※ 관련 자료 첨부					

※ 상담(신청)내용은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, 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한다.

※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.

성희롱 고충 상담일지				
상 담 일	20 . . .(요일) 시 분	사 례 번 호		
내 담 자		회 기	회	담 당 자
상담방법	① 방문 ② 전화 ③ 인터넷 ④ 기타			
상 담 내 용				
처리결과		사유		
차기 상담일시 : 20 . . .(요일) 시 분				